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0권 제1호(통권 제77호, 2009 · 봄호)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실태와 발전방안*

조 병 인**

국 ▌문 ▌요 ▌약

범죄가 다양화지능화 · 전문화 · 광역화 · 대형화 · 국제화로 치닫고 사법개혁의 결과로 수사 · 재판환경이 판이하게 변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면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나 실제상황은 취약하고 미흡한 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발전의 핵심요소로 조직, 사람, 자금, 협력, 구심점(리더십) 등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과 관계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에 있어서 소통교류가 매우 소극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법과학 및 과학수사 교육, 세미나 등 법과학연구를 주도해 나가는 국과수는 현재 감정업무가 폭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일반행정기관이었던 국과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유일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경찰청과의 공식적인 관계도 달라졌지만, 오랫동안 상급기관이었던 경찰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과수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소통교류를 증대하고, 민간의 감정 · 감식활동을 장려하고, 전문교육을 다양화 ·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과학연구 지원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국과수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주제어 : 법과학, 과학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수사

---

* 이 논문은 과학기술부(2008.3.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의 2008년도 기획연구사업인 "과학수사 중 · 장기 발전방안 연구"(책임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희선 소장)에 참여하여 필자가 단독으로 연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Ⅰ. 서 론

자연과학의 이론 및 전문기술을 범죄수사, 사고/재난조사 등에 활용하여 민 · 형사절차의 투명화 및 신속화에 기여하는 학문분야를 법과학[1)]이라 이르고, 범죄수사에 법과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과학수사라 일컫는다. 법과학은 증인 및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중요한 사실이나 인과관계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범죄입증과 공소유지를 돕고 재판과정에서 법관 및 배심원의 심증형성과 양형결정에 기여한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면 법과학 및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나 실제상황은 취약하고 미흡한 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 법과학 및 과학수사를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이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사회변동에 수반하여 범죄와 사고는 다양화 · 지능화 · 전문화 · 광역화 · 대형화 · 국제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법개혁의 결과로 수사 · 재판환경이 판이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법과학 및 과학수사를 시급히 발전시킬 필요성과 연관되는 수사여건의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이 함축할 수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와 시장경제의 정착 및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으로 범죄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둘째,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기본권 및 적법절차 보장이 절대적 가치로 중시되어 수사요원들이 범죄자들에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다.

셋째, 범죄수법의 지능화, 전문화로 범인추적 및 증거수집에 법률적 제약 및 현실적 한계에 직면할 때가 많다.

넷째, 범죄의 급증으로 수사업무는 폭주하는데 수사부서 기피풍조의 확산으로 수사기관의 총체적 수사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법과학 및 과학수사를 시급히 발전시킬 필요성은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으로 증언 및 증거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인정기준이 한층 엄격해진 재판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1) 일반적으로 법과학은 감정 · 감식에 관한 과학을 총칭하며, 법의학 · 법의병리학 · 법의혈청학 · 법이화학 · 법생물학 · 문서감정학 · 거짓말탐지학 · 유전자감식학 등으로 분야를 구분한다.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면 여간해서 유죄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실험적으로 시행중인 배심재판제도가 본격적으로 채택되는 단계에 이르면 '과학적 입증'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강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길은 법과학 및 과학수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과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수많은 변수들 가운데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의 취약점을 들춰내서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강구해야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발전의 필수요소로 여길 만한 변수들을 지목한다면 조직, 사람, 자금, 협력, 구심점(리더십) 등 다섯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이들 외에도 사회풍토를 비롯한 부지기수의 요인이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발전에 영향을 미칠 테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비중이 큰 핵심변수 중의 핵심변수는 위의 다섯 가지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이해에 입각하여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실태

1.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수행조직

가.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수행기관(부서)

우리나라에서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조직은 네 종류로 파악된다. 경 · 관 · 학 클러스터 구축의 결과로 서울과 광역시의 일부 의과대학(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에서 운영중인 법의학교실과 몇 몇 민간병원에서 현장수사를 지원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나 담당하는 역할은 변사체 부검 및 검안에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는 중앙정부와 그 소속기관이 전담하

고 있고, 광역시나 도(道)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를 수행하는 공공연구소는 하나도 없다.

미국의 경우 전국에 걸쳐서 약 320개의 공공 법과학연구소(publicly funded forensic crime laboratory)가 설립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법작용에 필요한 감정 · 감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범죄감정연구소도 재정지원의 주체에 따라 연방, 주, 카운티, 도시 별로 다양한 규모로 설립되어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과학경찰연구소(도꾜) 이외에 지방자치단위인 도도부현에 57개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설치하여 해당지역 자치정부로부터 부분적이나마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전국의 4개 지역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고 한다)의 분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는 않는다.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과학수사계 또한 사정이 같다. 반면에 일본 각지의 과학수사연구소들은 비록 법적 지위는 도도부현 경찰본부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과학연구 주도

〈표 1〉은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수행기관(부서)별 정원을 파악하여 나타낸 것으로, 2008년 8월 현재 약 1,286명 정도의 인원이 각급 국가기관에서 전문적인 감정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관별 정원을 비교해보면 경찰청의 정원이 전체의 약 72.3%(93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는 국과수의 정원이 전체의 22.1%(284명)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행정요원과 기능직 등을 제외한 순수 감정전문인력은 47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감정인력의 기관별 점유율은 국과수 39.8%, 경찰청(지방청 및 경찰서 포함) 47.2%, 대검찰청 7.4%, 국방부 5.5% 등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1〉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수행기관(부서)별 인원

부처(기관)명		기관(부서)명	정 원		감정전문인력	
			인원(명)	점유율(%)	인원(명)	점유율(%)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서/동/북부분소]	**284명**	**22.1**	188	**39.8**
경찰청	직 할	수사국 형사과 과학수사센터	250명	-	223	47.2
	지방청	수사부(과)/형사과 과학수사계	680명	-		
	소 계		**930명**	**72.3**		**47.2**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과학수사담당관(실)	**35명**	2.7	35	**7.4**
국방부	직 할	조사본부 과학수사센터	31명	-	26	5.5
	육 군	육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	6명	-	-	
	소 계		**37명**	**2.9**		**5.5**
합 계			**1,286명**	**100.0**	472	**100.0**

국과수의 경우 전체인원 284명 가운데 188명(66.2%)이 순수 감정전문요원이다. 나머지 96명은 경찰직(8명), 기능직(46명), 행정요원(4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의 경우는 전체인원 930명 가운데 223명(24.0%)이 감정전문요원이다. 법과학관련 전문분야에서 감정요원 인증시험에 합격한 전문수사관 100명,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 40명, 거짓말탐지요원 30명, 검시관 53명 등이 경찰청 본청과 15개 지방경찰청 및 전국 330여개의 경찰서 과학수사요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과 국방부 과학수사센터에는 각각 35명과 31명의 전문감정요원이 배속되어 있다.

그런데 현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 검찰 · 국방부의 전문감정요원 가운데 많은 인원이 국과수요원들로부터 전문교육을 받고 감정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현장수사를 담당하느라 법과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경찰 · 검찰 ·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많은 부분을 국과수가 뒷받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앞날은 국과수의 발전 여부에 달려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단법인 한국법과학회 주요 직책의 대부분을 국과수요원들이 맡고 있는

현실[2]은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발전을 국과수가 견인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법과학연구 및 증거물 분석감정 실태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업무 폭주

〈표 2〉는 국과수(4개 분소 포함)가 최근 5년 6개월 동안 처리한 감정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매년 대략 20만건 안팎의 감정의뢰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03년 및 2006년에 각 전년대비 감정실적이 20.1%와 1.8%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에는 대략 5%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7의 감정실적을 비교해보면, 1년 동안 224,589건을 감정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감정유형별 실적을 비교해 보면, 혈중알코올(음주) 56,995건, 유전자분석 52,309건, 혈액형 25,147건, 향정신성의약품 22,703건 순으로 실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세 감정유형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혈중알코올(음주) · 혈액형 ·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감정실적이 줄거나 증감을 반복해온 데 비하여 유전자분석의 경우는 감정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정수요의 증가에 맞춰서 계속 인력을 보강하고 있지만, 전문요원이 19명에 불과하여 야근까지 감수해도 밀려드는 감정요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18명의 법의관이 변사체의 부검을 담당하고 있는 법의감정 부문은 인력난이 특히 심각하다. 인구 10~20만명당 1명의 법의관(coroner) 혹은 법의조사관(medical examiner)를 두고 있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인구 260만명당 법의관 1명을 두고 있을 뿐이라서 시체부검 및 검안 서비스를 제대로 충실히 제공하기가 더 없이 힘겨운 실정이다.[3] 국과수 직제상으로는 24명의 정원이 주어져 있으나 직무가 힘든데다가 처우마저 열악하여 실제로 재직중인 부검의는 18명뿐이다. 법의관을 지원하는 의사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이직률마저 높다.

---

2) 학회의 회장(1명), 부회장(2/4명), 총무이사(1/2명), 간사(1/2명), 학술이사(1/2명), 산학협동이사(1/2명), 기획이사(1/2명), 재무이사(1/2명), 사업이사(1/2명), 국제협력이사(1/2명), 홍보이사(1/2명), 편집위원회 간사(1명), 편집이사(8/16명), 평의원(5/60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간부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sfs.org/)의 학회소개 메뉴(조직) 참조.

3) 심희기, "법학자가 본 대한민국 법과학의 현황과 과제", 「제15회 한국법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7년 6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법과학회, 44-45쪽, 참조.

〈표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4개 분소 포함)의 감정처리 건수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30
계	210,500 (증 20.1%)	220,698 (증 4.8%)	208,193 (감 5.7%)	211,934 (증 1.8%)	224,589 (증 5.9%)	119,640
시체부검 · 검안	5,406	4,897	4,128	3,877	3,576	1,935
혈 액 형	42,324	36,202	32,900	36,296	25,147	14,962
유전자분석	17,539 (-)	23,698 (35.1)	31,704 (33.7)	36,179 (14.1)	52,309 (44.6)	32,407
문 서 감 정	8,074	8,892	12,514	10,710	8,161	3,225
영 상 분 석	620	2,204	3,071	8,982	3,956	1,223
일반독물	18,974	18,423	16,451	12,088	11,559	6,253
의 약 품	5,929	7,285	7,059	9,613	11,343	6,671
마약 · 대마초	8,258	8,701	6,401	6,296	8,532	4,566
향정신성의약품	17,603	20,177	15,419	15,968	22,703	12,780
유해환각물질	2,393	2,256	1,851	1,264	1,698	795
혈중알코올(음주)	65,196	68,719	57,940	52,754	56,995	25,352
화재 · 폭발	2,292	2,687	2,866	2,567	3,152	1,705
교통사고	1,386	1,278	1,292	1,301	2,607	1,517
기 타	14,506	15,279	14,597	14,039	12,851	6,249

18명 중에서 부검 · 검안 참여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장, 과장, 분소장 등의 보직자와 병리분석 담당자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9명의 부검의가 전체 부검건수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다. 인력난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서울(고려대 및 카톨릭대 의과대학)에 법의관사무실을 운영하고, 일부 지방에는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경 · 관 · 학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부검 및 검안업무의 상당부분을 아웃소싱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8월 현재 부산(부산대 법의학연구소), 경북(경북대 법의학과), 전라(전북대/전남대/조선대 의과대학, 성가를로병원)에서 부검의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법과학자와 감정요원에 대한 압박 증대

대폭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모든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2008년 1월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부분적이나마 배심재판제도가 실험적으로 시행되어, 국과수의 감정인력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으로 피의자자백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법과학자의 감정소견서에 주로 의존하던 심리방식 대신에 피고인, 증인, 법과학자가 함께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야 하는 심리방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종래 법과학자들의 주된 역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구실에 머물면서 기계적인 실험과 분석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으나 오늘날의 법과학자들은 입장이 많이 다르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감정결과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변호인들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의연하게 대처하려면 보다 더 수준 높은 실력으로 변호인의 탄핵을 극복하여야 한다. 머지않아 국내의 법정에서도 외국의 변호사와 법과학자들이 검찰 혹은 피고인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대방과 다툼을 벌이는 시대가 되면, 현재처럼 검사와 변호인이 재판결과를 좌우하기보다 법과학자들이 감정절차의 적법성 및 감정결과의 진위 여부를 따지고 들어 재판과 양형결정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아질 개연성이 높다.

만약에 법과학자들이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여 감정 · 감식에서 중대한 과오나 실책을 드러내면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해당 법과학자는 경찰, 검찰, 언론, 피해자로부터 맹렬한 비난과 원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공판중심주의 재판방식의 도입으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증명력을 까다롭게 따지는 재판환경 하에서도 국과수가 여전히 감정업무의 권위를 갖도록 하려면 국과수의 전문인력을 하루빨리 증원하여 연구환경의 개선 및 감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 할 것이다.

3. 법과학 및 과학수사 전문교육 현황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육

1) 내부교육 및 학술행사

〈표 3〉은 2007년 1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수소가 연구소의 감정인력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각급 행사를 개최한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1년 동안 모두 51회의 자체교육과 67회의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법의학부 및 법과학부의 소관부서별 교육실적은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계에 반영된 교육실적 가운데는 감정업무와 무관한 직원교육 혹은 부서

장의 훈시나 설명회 수준에 그쳤던 경우들도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실적은 적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내부교육 현황(2007년 기준)

구 분		자체교육(51회)			학술행사 개최/참석(67회)				
		직무교육	세미나	신입교육	워크숍	세미나	포럼	토론회	강연회
법의학부	법의학과	2	-	-	-	9	-	-	-
	유전자분석과	4	-	-	1	-	-	-	-
	범죄심리과	2	3	-	1	3	-	2	-
	문서영상과	2	-	7	1	-	-	-	-
	소 계	10	3	7	3	12	-	2	-
법과학부	약독물과	1	-	2	2	6	-	-	-
	마약분석과	10	-	-	1	-	1	-	3
	화학분석과	1	-	-	2	-	-	-	-
	물리분석과	1	-	2	4	-	-	-	-
	교통공학과	6	-	-	2	-	-	1	-
	소 계	19	-	4	11	6	1	1	3
분소	남 부	1	-	-	-	1	1	-	-
	서 부	1	-	-	4	12	1	-	-
	중 부	1	-	1	-	1	-	-	1
	동 부	4	-	-	1	6	-	-	-
	소 계	7	-	1	5	20	2	-	1
합 계		36	3	12	19	38	3	3	4

2) 위탁교육 수행

〈표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탁교육 수행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의뢰기관
	횟 수	인 원	횟 수	인 원	횟 수	인 원	
합 계	8	214	12	212	3	96	
검시관교육(6개월)	1	16	2	29	-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경정특채자교육(4일)	1	10	1	5	-	-	경찰청
화재감식 전문요원 양성교육(3개월)	1	12	1 (1주)	15	1 (1주)	15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신임과학수사요원 교육(2~3일)	1	59	3	153	1	79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사법연수생 교육(2주)	1	4	-	-	1	2	사법연수원
미세증거물채취 전문화 교육(2주)	-	-	5	10	-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마약류수사 전문과정(5시간)	2	73	-	-	-	-	경찰수사연수원
현장감식 전문과정(4시간)	1	40	-	-	-	-	경찰수사연수원

〈표 4〉는 국과수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법과학 및 과학수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3년 동안 8종류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23회에 걸쳐 522명을 교육하였으며, 이 중 사법연수생 6명을 제외한 나머지 516명은 경찰공무원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3년 동안 국과수가 개설한 교육과정은 모두 합해서 8종류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3년 동안 계속해서 운영된 것은 화재감식 전문요원 양성과정(3개월)과 신임과학수사요원 교육(2~3일) 두 가지 뿐이다. 마약류수사 전문과정과 현장감식 전문과정처럼 2년 연속 운영되지 않은 과정도 있다. 2007년의 교육실적이 이전 2년 동안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은 국과수의 건물보수공사로 교육이 곤란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국과수에서는 외국 법과학연구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이나 외국의 학술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이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포함하는 각급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연구소의 감정요원들을 파견하여 선진기술과 함께 필요한 지식과 안목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학계의 권위자 및 수사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 또는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과학수사의 묘미와 신비를 소개하는 영화, 드라마, 소설, 잡지 등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교육효과를 거두고 있을 것이다. 그밖에 범죄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터득하는 부분도 교육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공식투자와 지원으로는 폭넓은 전문지식과 첨단장비를 이용한 고도의 감정기술을 요하는 많은 경우에 국과수가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따른다는 데 있다.

나. 경찰의 법과학 및 과학수사 교육

국립경찰은 기본적으로 3개 교육기관(경찰대학교,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의 교과목에 법과학 및 과학수사에 관한 과목을 포함시켜 간부 및 비간부로 임용되는 모든 경찰공무원이 법과학 및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터득하고 수사실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임용된 경찰관들을 위해서는 지방경찰청 단위에 과학수사실습교육장을 설치하고 국과수 전문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수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학계의 권위자 및 수사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 또는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연수원에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법과학 및 과학수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법과학 및 과학수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의 법과학 및 과학수사 연수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이나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포함하는 단기의 특별교육프로그램에 과학수사요원들을 파견하여 선진기술과 함께 필요한 지식과 안목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범죄 및 사고를 따라잡기에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표 5〉 경찰수사연수원의 법과학 및 과학수사 교육실적

구 분	'06년		'07년		'08년 상반기		비고
	횟 수	인 원	횟 수	인 원	횟 수	인 원	
합 계	10	390	11	330	14	400	
과학수사과정	4	160	3	90	3	90	'06년: 2주 '07년이후: 4주
현장감식전문과정	3	120	3	90	3	90	'06년: 3주 '07년: 1주 '08년: 2주
화재감식전문과정	2	80	2	80	2	80	'06년: 2주 '07년이후: 1주
현장사진촬영기법전문과정	-	-	2	40	4	80	1주
범죄분석전문과정	1	30	1	30	1	30	'06년: 3주 '07년이후: 1주
거짓말탐지검사관양성과정	-	-	-	-	1	30	12주

* 출처 :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과, 2008년 8월 4일.

〈표 5〉는 경찰수사연수원의 법과학 및 과학수사 교육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6개 전문교육과정을 총 35회 개설하여 합계 1,120명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교육을 이수한 인원 가운데는 경찰청 수사국과 국방부 조사본부 사이에 체결된 '수사업무 공조협정'[4]에 의해 위탁교육이 의뢰된 국방

부 과학수사센터 및 육군과학수사센터의 요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교육과정은 법과학의 여러 영역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한 6개 영역에 한정되고 있다. 각 과정의 교육기간도 1~2주에 불과한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심화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기타 기관의 법과학 및 과학수사 교육

1) 검찰의 과학수사교육

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 과학수사장비 사용방법 등 교육
나. 법무연수원 : 검사 및 검찰수사관 직무교육에 포함시켜 교육

2) 군기관의 과학수사교육

가. 국방부 과학수사센터 : 국과수, 경찰수사연수원, 대검찰청 위탁교육
나. 육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 : 국과수, 경찰수사연수원, 대검찰청 위탁교육

3) 사법연수원의 과학수사교육

가. 사법연수생, 위탁연수생 등의 교과과정에 '법과학 및 과학수사' 포함
나. 과학수사연구소에 단기 위탁연수 의뢰(2005년 : 4명, 2007년 : 2명)

4. 외국의 법과학 및 과학수사 교육기관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과학수사국 범죄학연구소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과학수사국

4) 2006년 2월 28일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김용화 치안감)과 국방부 조사본부장(한성동 소장)은 완벽한 국가안보 및 민생치안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 제9조(교육 및 연구)에 "양 교육기관은 상호 교육기관에 수사관을 위탁교육하거나 교육강사를 지원하는 등 교육 및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ureau of Forensic Services: BFS)은 산하기관으로 범죄학연구소(California Criminalistics Institute: CCI)를 설립하여 법과학분야 실무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CCI는 캘리포니아주 각급 법집행기관 및 법과학계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1985년 당시 캘리포니아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할 재원이 없었던 관계로 BFS는 자금확보를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BFS는 의회와 법집행기관들을 설득하여 범죄학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후원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지낸 상원의원 존 시모어(John Seymour)을 비롯한 여러 명의 지역검사, 보안관, 경찰서장 등의 노력이 모아져서 CCI가 탄생되었다. 1986년 9월 캘리포니아주지사가 SB 2390 (chapter 1040, statutes of 1986)에 서명을 함으로써 CCI설립 숙원이 이루어졌다.

CCI의 제1차적 역할은 법과학분야의 지속적인 변화추세에 맞춰서 주 및 지방의 법과학자들에게 필요한 법과학에 관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다. CCI의 교육과정은 새로우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법과학기술을 범죄연구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CCI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 주 및 지방단위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법과학 교육
- 캘리포니아주 범죄실험실에 대한 문헌 및 분석자료 제공
- 발전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숙달견본(proficiency samples) 제공, 개선절차 권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BFS 범죄실험실의 감정능력 향상
- 복잡한 기계설비 및 특수한 지식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참고용 사례분석 자료집 제공
- 법과학적 평가에 대하여 보다 더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및 장비의 개발과 평가

CCI 교수진에 의해 개발된 연구소 교과목의 대부분이 경찰관표준및교육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 POST)의 인증을 받은 것이다. 매년 700명 이상의 범죄학자 및 수사경찰요원들이 CCI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교과목 및 교육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5]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CCI 수료생 가운데는 시, 군, 주, 연방기관의 범죄학자, 증거기술자, 탐정(형사), 현장수사요원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2) 일본과학경찰연구소의 법과학연수소

일본의 과학경찰연구소 부속의 법과학연수소는 전국 도도부현 경찰본부 소속의 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국 감식과(鑑識課)의 감정기술직원을 대상으로 통일된 감정기술을 교육하고 있다.[6] 현장자료에 대한 감정검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공판정에 있어서도 보다 정밀한 감정이 요구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6〉 일본과학경찰연구소 부설 법과학연수소의 교육과정

구 분	교 육 내 용
양성과(養成科)	신규채용(배치) 직원을 대상으로 감정검사에 관한 기초지식 및 기능 전수
현임과(現任科)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정검사에 관한 지식, 기능을 재교육
전공과(專攻科)	특정 분야의 감정검사에 관한 고도의 지식 및 기능 전수
연구과(硏究科)	국내외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특정 분야에 관한 고도의 지식, 기능에 관한 연구 유도
관리과(管理科)	특정검사에 관한 업무관리를 시작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관리능력 함양

법과학연수소는 전국 경찰의 감정기술직원(생물, 화학, 공학, 문서, 폴리그래프, 지문, 사진, 족적 및 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의 감정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직원을 말한다)들이 감정업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기술 등을 가르치고 있다. 〈표 6〉에 소개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연수 및 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JICA(일본국제협력사업단)와 제휴하여 법과학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외국 경찰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법과학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5)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ci.ca.gov/about/aboutcci.htm) 참조.
6)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rips.go.jp/training/index.html) 참조.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예산의 편성

법적으로 국과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유일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agency)이다. 책임운영기관은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 및 경영실적 계약을 맺고,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제도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며, 영국의 대처 전총리가 정부개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했던 것을 국민의 정부 시절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공채를 통해 선발된 계약직 기관장이 인사, 예산 등 운영상 자율권을 부여받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민간위탁'과는 차이를 갖는다.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 대하여는 정부가 1년 단위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연봉 및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책임운영기관 직원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투·출자기관(공기업), 민간위탁된 국가기관 등의 직원과 차이를 갖는다. 성격상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보다 더 민영화되었지만 공기업보다는 더 행정기관에 가깝다. 영국의 경우 전 행정기관의 80%가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 정부도 1999년 1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수행업무 가운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국과수도 그 가운데 한 기관이다. 종전의 일반 행정기관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바뀌어 정부조직법 대신에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 입각하여 국과수의 예산은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법」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 준하는 예산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과수의 예산안도 작성되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다.[7)]

7) 예산편성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국가재정법」 제2장(예산) 제2절(예산안의 편성) 부분 참조.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책임운영기관설치 · 운영법」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1항[8]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책임운영기관(국과수 포함)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에 있어서의 소통교류

1981년 12월 30일 국과수와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사이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에 관한 공조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1987년 7월 육군과학수사연구소가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2006년 2월 국방부 조사본부로 통합)를 개편하고 육군은 별도의 육군과학수사센터를 설치한 이후로는 두 기관간이 공히 국과수와 실질적인 공조와 교류를 지속해 왔다. 1996년 10월 17일에는 국과수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사이에 '상호협력협약'이 체결되고, 2000년 10월 25일에는 국과수와 영국문화원(서울) 사이에 인적교류 및 기술정보교환을 위한 '한 · 영 법과학 기술협약'이 체결되어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천해왔다.

우리나라에서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공식적 소통교류 현황을 보면, 국방부 과학수사센터와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2006년 2월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하여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에 관한 공식적 소통교류를 행하고 있다. 공조사항의 대부분이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수사실무상 필요한 협조사항으로 채워져 있지만,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한 소통교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법의관 부족에 따른 부검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고려대 및 카톨릭대 의과대학)에 법의관사무실을 운영하고, 일부 지방에는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경 · 관 · 학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부검 및 검안업무의 상당부분을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도 소통교류의 좋은 본보기라 생각된다. 그리고 비록 간헐적이나마 각 기관별로 국제

8)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 차원의 소통교류에 주력하고 있고 개인 차원의 접촉과 교류도 드물지 않지만, 범죄와 사고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여겨진다.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에 있어서 소통교류가 매우 소극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예산 · 시간 · 경험 · 관심 등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식책무에 '소통교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발생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강제적인 수단이라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를 주도하는 국과수의 기본운영규정을 비롯하여 경찰 · 검찰 · 군대의 과학수사와 관련되는 어느 규정에도 소관부서의 사무(업무)분장에 상호협력을 위한 '소통교류'를 명시한 사례가 없다. 업무의 지침서인 규정의 어디에도 '소통교류에 주력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으니 자연히 주어진 책무로 느끼는 사람이 적고, 책무로 느끼더라도 인력과 예산의 배정에서 후순위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7.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적 지위

가. 행정안전부의 소속책임운영기관

국과수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행정기관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경우에 속한다. 기관의 법적 지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설치 · 운영법」 제2조 제2항)이고,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른 지위는 행정형기관에 해당한다(「책임운영기관설치 · 운영법」 제2조 제3항). 다음의 〈표 7〉은 법률에 의해 새로 탄생한 책임운영기관들이 일반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과 어떤 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국과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표 7〉 책임운영기관과 일반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과의 차이

구 분	책임운영기관	일반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설치근거	책임운영기관 설치 · 운영법률	정부조직법	특별법
개념	정부조직으로 집행기능이 독립적 운영	일반행정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정부지분 50% 이상)
업무성격	공공적 성격 (독립적 · 집행적 업무)	공공적 성격	국민경제상 필요한 서비스(기업적 성격)
직원신분	공무원 (일정범위 계약직)	공무원	비공무원(민간)
기관장 임용	공모 (계약직, 임기3년)	임명권자가 임명 (지자체장 선출)	사장추천위→주무장관→대통령 임명→계약직 (임기3년)
직원 임용	기관장이 임명 (장관이 위임)	5급 이상: 대통령 6급 이하: 소속장관	기관장이 임명
평정·승진	기본운영규정 (일부 대통령령)	대통령령	기관내부규정
예산·회계	특별회계(기업회계원칙)	일반회계	기업회계원칙 적용
예산 전용 · 이월	일정범위 내 허용	금지(예외적 허용)	제한 없음
성과평가	부처별 운영심의회, 평가위원회(행정안전부)	감사, 심사분석 등	투자기관운영위원회

* 출처 : 김근세, 「책임운영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집문당, 2000, 232쪽.

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통제

「책임운영기관설치 · 운영법」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정의)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경영혁신에 소홀하거나 성과가 부진하여 책임을 묻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법률 전반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중앙관리기관의 통제지향적인 제도지속성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위험가능성을 감안하여 관리자율성은 약한 반면에 성과책임은 강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9] 그러나 통제

일변도의 관리방식은 기본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원초적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법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 법 제4조는 책임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만 소관사무 가운데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때는 기획재정부 및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행정기관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고식경로는 전혀 없다.

〈그림 1〉은 「책임운영기관서설치 · 운영법」에 규정된 책임원영기관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국과수의 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나타내본 것이다. 그런데 그림은 법 제3조(운영원칙)에 규정된 '행정/재정상 자율성 부여'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이 무색할 정도로 감시 및 확인 장치가 겹겹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직 · 간접으로 개입 및 간섭할 수 있는 기회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 · 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제7조 제1항 및 제3항).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기관장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셋째,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자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고, 동 심의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제12조 및 제13조).

9) 김근세, 「책임운영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집문당, 2000, 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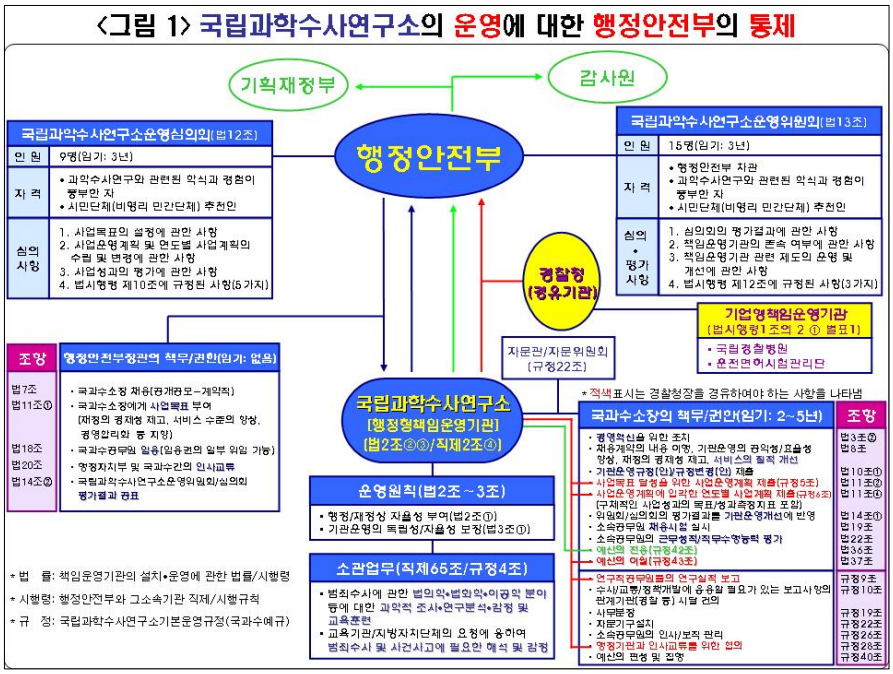

〈그림 1〉 국립과학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통제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법조항들이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첫째는, 책임운영에 필요한 자율적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기관별 ·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18조 및 제25조).

둘째는, 책임운영기관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두고, 각 계정별로 주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법 제27조 및 제29조).

셋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1항[10]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책임운영기관(국과수 포함)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4조).

넷째는 예산운영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월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법 제36조).

다섯째, 특히 국과수의 경우는 법적 지위가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면서 경찰청의 공식적 감독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들이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국과수를 포함한 대다수의 책임운영기관들이 해당중앙행정기관의 광범위한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취지를 충실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장들이 기관운영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 국과수와 경찰청의 법적(공식)관계 변화

〈그림 2〉는 국과수와 경찰청의 법률적(공식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왼쪽에서 보듯이, 행자부훈령으로 제정(1992.5.7)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운영규칙」이 유효하던 시기의 국과수는 연구소운영 전반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리하여 국과수소장은 행정/재정/기관운영의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경찰청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했다. 2006년 1월 1일자로 연구소의 법적 지위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일반행정기관)에서 행정/재정/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되었어도 경찰청장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8.6.25일자로 동 규칙이 폐지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기본운영규정」이 이를 대체함으로써 연구소는 명실공히 법률이 부여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종전의 규칙에 의해 경찰청장이 국과수소장에 대하여 행사하던 감독권·승인권·명령권·요구권·제정권 등이 모두 사라지고, 같은 규칙에 의해 국과수소장이 경찰청장에

10)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하여 가지던 제출 및 보고 의무도 모두 소멸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과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의무도 사라졌다.

새로운 규정의 발효로 경찰청의 입장이 '감독 · 지원기관'에서 '경유기관'으로 바뀌어, 국과수소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포함한 6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경찰청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었다. 반면에 국과수소장에게는 규정 제10조(자료의 시달 건의)의 규정에 따라 제9조(실적보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연구직 공무원들의 연구실적 가운데 수사 및 교통실무와 정책개발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기관 등 관계기관에 시달하도록 건의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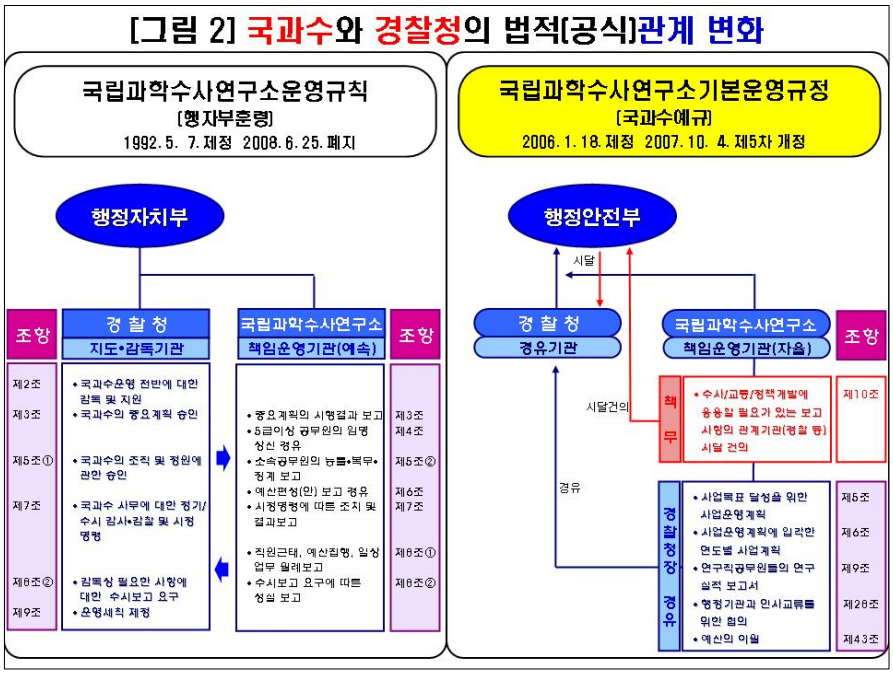

〈그림 2〉 국과수와 경찰청의 법적(공식)관계 변화

국과수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경유기관으로서 경찰청이 하여야 하는 역할에 대하여는 사무처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2조 (문서의 배부 및 처리) 제2항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국과수로부터 접수한 경유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본문에 표시하거나 붙임으로 첨부하는 역할만 해주면 된다.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과수소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수사 및 교통실무와 정책개발에 응용하도록 시달되는 사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경찰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시달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규정은 찾을 수가 없다.

국과수와 경찰청의 새로워진 법적(공식)관계는 1999년 1월 국민의 정부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국과수와 경찰의 법적(공식)관계가 현재와 같이 전혀 새로운 형국으로 달라진 변화는 2006년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기본운영규정」이 새로 탄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동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설치 · 운영법」 제10조(기본운영규정)의 규정에 따라 국과수소장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과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망라하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제정당시부터 행자부령과 사실상 다름이 없는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14년 앞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1992.5.7.)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운영규칙」 및 그에 근거하에 마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운영지침」(2001.12.8. 경찰청과수61110-27796)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 새로 제정된 규정이 집행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기존 규칙보다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고, 법과학적 지식 및 감정서비스의 최대 수요자로서 국과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제공하며 오랫동안 직근 상급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경찰과의 관계를 단기간에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기도 쉽지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라. 법적(공식)관계의 변화가 함축하는 의미

국과수와 경찰청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경찰청장이 국과수운영 전반을 지원할 의무도 함께 사라졌다. 국과수소장의 입장에서는 기관경영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게 된 반면에, 최대의 고객이자 든든한 보호막이며 실질적인 후원자인 막강한 배후를 상실하는 난국을 맞게 된 셈이다. 이로써 국과수와 경찰청은 공히 모든 지혜를 다 발휘하여 변화된 환경에 슬기롭게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법

적(공식)관계의 변화는 두 기관 모두에게 중대한 도전을 안겨준 동시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법적(공식)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법적으로 여전히 국과수 직근 상급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서관리규정(대통령령) 제9조 (문서의 발신원칙) 제2항의 "하급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외의 상급기관(당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 이는 국과수소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혹은 제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경찰청은 법적(공식)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과수소장에 대하여 직근 상급기관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Ⅲ.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발전방안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역량 강화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과학 전문인력 증원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에 대한 수요의 급증에 맞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문인력을 조속히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8항의 [별표 9]에 규정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령은 행정안전부장관 직권으로 개정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까다롭거나 과정이 번거로운 문제도 따르지 않는다. 다만, 인원을 어느 정도로 늘릴 것인지는 감정 · 감식 전문인력에 대한 현실적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해본 연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수요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는 절차를 거쳐서 국가의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인원을 늘리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은 자동으로 뒤따르게 될 것이다.

나.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조직개편 및 업무공간 확장

연구소의 인력이 증원되면 당연히 늘어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감정 · 감식수요의 폭증추세를 감안하여 현재의 연구소 본소는 경인분소로 운영하게 하고 5개 분소를 통합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새로 설립되는 연구소 본소 기관장의 직무등급을 현재보다 1~2단계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위해 적합한 부지를 조기에 물색하여 기능성이 고려된 업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과학기술을 응용한 첨단장비들을 두루 갖춘다면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분석감정과 관련되는 제반 환경이 현저하게 개선 및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과학연구 지원의무' 명시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법과학연구를 지원하는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과학연구를 지원할 의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의무를 명시하는 구체적 방법은 현행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지원, 청소년보호의 수행, 청소년활동의 진흥 등과 관련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국민보호 및 국민복지와 관련되는 국가의 책무는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 · 장년기 · 노년기에 도달한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가는 언제 어떤 상황 하에서도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느낄 때에 비로소 주어진 역할과 본분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법과학 연구 및 과학수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3. 민간의 법과학연구 및 감정 · 감식활동 장려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수준을 높이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가들처럼 민간부문의

법과학연구 및 감정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과수나 경찰 · 검찰 · 군대의 조직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회계연도가 고정되고 예산운용도 경직되어 있어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하는 데 많은 한계가 따른다. 하지만 민간기관은 현실적 필요에 따라서 조직 및 예산운영을 탄력적 ·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우리나라에도 2001년에 한국법과학연구소가 개소되어 민간부문의 종합적 분석감정기관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사법작용에 기여한 실적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전자검사/정액검사, 교통사고분석, 영상음성분석, 문서감정, 지문감정, 화학분석, 거짓말탐지 등을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는 있으나 감정의뢰가 접수되는 건수가 적다보니 상근 대신에 비상근 전문인력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법원 등의 요청이 있으면 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정부 산하의 법과학공사(Forensic Science Service: FSS)[11]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시도해 볼 만한 훌륭한 모델이라 생각된다. FSS는 영국의 버밍햄에 본부를 두고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6개의 분소를 운영하는 민간부문의 대규모 종합적 분석감정기관이다. 국가조직에서 공사(GovCo)로 전환되던 1999년에는 재직인원이 500명 정도였으나 2005년에는 재직인원이 2,7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연간 매출액도 1995년의 2천9백만 파운드에서 2001-2002 회계연도에는 1억4천만 파운드로 증가하였고, 2004-2005 회계연도에는 1억5천만 파운드로 증가하였다.[12]

현재 FFS는 '법과학서비스 부문의 선주 두자(Market leader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services)'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웨일즈와 영국의 경찰기관에 유로로 법과학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의 수사기관과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훈련과 상담 및 법과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SS는 재산범죄, 강력범죄, 마약범죄, 중독운전 및 교통사고, 조직범죄, 국제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수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감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999년에 공사로 전환되어 2004년 5월까지 2,500여건의 범죄사건에 대해 법정증언을 담당하고, 약 1,800여건의 범죄현장에 참여하였으며, 130,000여건의 법정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

11)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rensic.gov.uk/forensic_t/inside/contact_us/index.htm) 참조.

12) Forensic Science Service,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참조.(앞의 심희기 교수 발표논문 63쪽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국과수를 영국의 FSS와 같은 민간부문의 종합적 분석감정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래해볼 필요가 있다. 범죄감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06년 6월 심희기 교수가 한국법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과수 민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진지하게 고래해볼 것을 제안[13]한 것은 매우 적절한 방향 제시였다고 생각된다.

4. 전문교육의 다양화 · 체계화

가. 법과학연구 · 교육센터(가칭) 설치

흔히들 국가의 교육정책을 일컬어 '백년대계(혹은 '백년지대계')라 일컫는다. 여기서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은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기 때문에 '백년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14] 그런데 국가운영에서 사법작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법과학교육을 위한 국가정책 역시 백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수립되고 아낌 없는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지금처럼 산발적,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방식 대신에 별도의 법과학연구 · 교육센터(가칭)를 설치하여 통일적이고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법과학연구 · 교육센터의 교육대상은 국과수의 연구직(신규채용직원 포함), 각급 경찰 · 검찰 · 군대의 과학수사요원, 민간부문의 법과학전문가 등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교육을 위한 학과목은 앞에 소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과학수사국 산하의 범죄연구소나 일본과학경찰연구소의 법과학연수소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면 어렵지 않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교육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강의,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 토론회, 집담회, 사례발표

13) 심희기, 앞의 발표논문 63쪽.

14) "백년대계(혹은 백년지대계)"에 반대되는 뜻으로서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며 시류에 야합하는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계획을 "권의지계(權宜之計)"라 한다.

회, 현장실습, 모의실험, 영화감상 등의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수사경찰에 대한 법과학교육에 관한 사항'을 상위규범에 명시

국과수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직무) 제1항 및 국과수예규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기본운영규칙」 제4조 제1항에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 · 법화학 · 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기관의 소관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검찰의 경우 역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5 제2항 제5호에 '법과학 및 과학수사와 관련된 지도 · 교육'이 분장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의 경우는 경찰기관의 직제나 사무분장을 규정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안전부령 등에는 '법과학교육'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단지 경찰청훈령인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25조 제1호 나목에 '과학수사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의 분장업무를 규정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2조(수사국) 제2항 및 수사국장 산하 과학수사센터장의 분장업무를 규정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9조(수사국에 두는 과) 제2항 공히 '법과학 교육'에 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과학수사센터(국방부)는 논외로 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경찰에 대한 법과학교육'을 경찰훈령보다 상위규범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도 명시하여 수사요원에 대한 법과학 및 과학수사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법과학교육에 대한 책임자의 직급를 한 단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5. 국과수 예산의 안정적 지원

인간의 몸속에 혈액이 부족하면 젊은 사람도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듯이,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으면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가 활기를 띠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국과수 및 경찰 · 검찰 · 군대의 과학수사 부서에 배정하는 예산은 우리나라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수준에 결정

적인 영황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체의 혈액이나 영양소에 비유될 수 있다.

국과수의 조직규모를 키우고 분석감정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문제도 사실은 예산의 문제다. 예산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도 세우고, 인재채용도 늘리고, 연구활동을 촉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처우 및 복지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연구 및 감정기술의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과학연구의 중추에 해당하는 국과수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과수의 법적 지위를 일반행정기관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시킨 이유는 책임운영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의 특수성과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서 비롯될 수 있는 취약요소들을 고려한 배려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너무도 많은 변수들이 개입하여 법률의 규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때도 많다. 다행히 국과수의 경우는 (수개의 다른 기관과 더불어서 특정 부처소속의 책임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 사례와 달리)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이라 예산배정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상황은 유사기관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총액을 뭉치 돈 형태로 각 부처에 나누어주기만 하고, 구체적인 배분은 각 부의 장관들에게 일임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예산배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장관이 법과학 및 과학수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거나 행정자치부 내부의 하부조직들에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국과수는 후순위로 미루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국과수의 소장과 간부들은 법과학연구와 사업추진에 매진해야 할 시간에 행정안전부의 담당자들을 주야로 찾아다니며 로비를 해야 하는 소모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과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가급적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정한 기준과 시책을 따라야 하는 부분에서는 국과수예산을 조정 혹은 삭감하기도 하지만, 장관도

예산담당 관료들도 가급적이면 국과수의 예산요구를 반영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발전이 잠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과수에 대한 예산지원이 제도적 기반위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정책의 경우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과수의 예산을 지원할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과수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범죄피해자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성매매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6.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유관기관간 소통교류 증대

현대사회는 정보사회다. 정보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들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시대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각자가 연구와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식정보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상호보완적 상승작용을 유발하여 각자가 폐쇄적 · 배타적으로 작업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과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작업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별적 작업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덧셈의 원칙에 따라 누적될 뿐이지만 협력과 분담을 통한 작업의 효과는 곱셈의 원칙에 따라 누적된다.

협력과 분담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지고, 정보의 공유는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교류(exchange)를 통해 현실화된다. 그러므로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계와 형사사법실무계의 유관기관을 망라하는 소통교류체계를 폭넓게 구축하는데 관심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내 유관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공조협력체제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수준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가들의 전문가들과도 다양한 형태의 소통경로와 협조채널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법과학시스템을 표준화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서 국과수 같은 기관이 국제적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아시아에는 국과수의 법과학연구 및 감정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국가들이 많아서 국과수가 법과학의 세계적 표준화를 선도하는 문제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시아지역에서 국제학회나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법과학 표준화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법과학시스템의 표준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면 기대하는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소통교류를 실천하는 방안으로는 국내외 학술단체 가입 및 학회활동참여, 공동연구수행, 연구성과 발표 및 전파, 번역사업 추진, 전문가클러스터[15] 구축, 외국의 유관기관들과 정기적인 인적교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에 있어서 소통교류를 증대시키려면, 국과수의 기본운영규정을 비롯하여 경찰 · 검찰 · 군대의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업무)분장과 관련되는 모든 규정에 상호협력을 위한 '소통교류 확대 의무'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각급 국가기관 사이에, 국방부와 경찰청 사이에 체결된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5조(수사의 지원) 및 제9조(교육 및 연구)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소통교류협정을 다양하게 체결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의 협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9조의 전체 내용이 반영된 공식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에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담당기관들과도 유사한 형태의 소통교류협정(MOU)을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국제적 차원까지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7.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 자율성 보장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은 국정관리에 적용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16] 종전의 전통적 · 수직적 · 통합적 관리방식 대신에 수평적 · 분권적 · 민주적 관리방식을

15) '클러스터'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단위로 1개 또는 복수의 섹터로 이루어진다. 작은 파일은 1개, 용량이 큰 파일은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저장한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정보기술 영업이나 기반시설에서, 하나의 공용 제어설비나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단말기 · 워크스테이션들의 그룹을 총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요즈음은 그 사용의 범위가 넓어져서 '정보의 공유를 위해 특정분야의 전문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16) 김근세,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아산재단 연구총세 제73집, 2000년 12월, 집문당, 14-15쪽.

따르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관장에게 '재량권'과 '운영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해당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책임운영기관제도이다.

그런데 국과수는 여타 책임운영기관들과 달리 행정안전부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이면서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경찰의 감독과 지원을 받는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국과수소장에 대한 경찰청의 위상을 직근 상급기관으로 이해하더라도 형식논리상 법적(공식)관계의 변화에 따른 관계규범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과수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을 경찰청 하부조직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9조, 「경찰청 사무분장규칙」(경찰청훈령) 제25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기본운영규정」(국과수예규) 제13조 등이 그 대상이라 생각된다. 〈표 8〉은 현재 시행중인 규범들 가운데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들을 열거해본 것이며, 각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표 8〉 국과수의 위상변화에 맞춰서 재검토되어야 할 규범

규 범	조	항	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조** (수사국에 두는 과)	⑧과학수사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대한 지원 및 감독**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경찰청훈령)**	**제25조** (과학수사센터)	과학수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업무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운영 지원 · 감독**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국과수예규)**	**제13조** (총무과)	①총무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국과수예규)**	**제4조** (공무원의 배정)	연구소의 부서별 공무원의 정원 배정은 **[별표]**와 같다.	[별표]

Ⅳ. 맺는 말

〈표 9〉는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실태와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직, 사람, 자금, 협력, 구심점(리더십) 등 다섯 가지를 핵심변수로 선정하여 각각에 대응하는 정책과제 및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해 본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실증조사를 통한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과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현황자료에 의존하여 평소의 생각과 주장을 서술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과학 및 과학수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앞으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데에 제1차적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론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그 책임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열성학도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된다.

〈표 9〉 법과학 및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요약)

구 분	정책과제	필요한 조치
조 직	전담조직의 단계적 확충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제49조제8항 [별표 9] 개정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력의 증원에 따른 조직개편 및 업무공간 확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과학연구 지원의무' 명시 • 민간의 법과학연구 및 감정·감식활동 장려
사 람	전문교육의 다양화·체계화	• 법과학연구·교육센터(가칭) 설치 • '수사경찰에 대한 법과학교육에 관한 사항'을 상위규범에 명시
자 금	소요예산의 안정적 지원	• 실정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협 력	소통교류의 적극적 확대	• 관련법규에 상호협력을 위한 '소통교류 확대 의무' 명시
구심점 (리더십)	국과수의 선도역량 강화	•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재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 경찰청과의 상생공영(相生共榮)방안 모색

다만, 국가공권력의 발동요건으로 인권보장 및 적법절차가 최우선으로 중시되는 변화된 국가사회에서 범죄와 사건, 그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재판 및 양형절차에 법과학

및 과학수사가 기여하는 정도와 그 중요성을 수긍한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적 지위를 신중하게 재검토해보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연구소 경영의 모든 면에 걸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간섭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의 지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관운영으로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법과학 및 과학수사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과거 한 때 추진되다가 보류된 적이 있는 '과학수사진흥법(가칭)'의 제정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지남, “외화내빈 국과수 ‘날 좀 보소’ :감정 능력 뛰어나지만 박봉에 격무로 줄사퇴…총체적 무관심 속 위상 제고 ‘나먼 길’ ”, 「주간동아」 통권559호 2006-11-07, 동아일보사, 2006.

고재훈, “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곽대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이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 “과유불급”, 「搜査硏究」 제26권 3호 통권293호 (2008년 3월), 수사연구사, 200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 50년사 : 1955~200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5.

김근세,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아산재단 연구총세 제73집, 집문당, 2000년 12월.

김남준, “유전자기록물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윤현, “‘한국 과학수사의 요람’ 국과수 :유전자 감식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 :석 · 박사급 전문가 181명 활약… 업무량 폭증 · 열악한 처우 등 개선돼야”, 「주간한국」, 통권 2137호 2006-08-29, 한국일보사, 2006.

노진섭, “국제 공인 한국 과학수사 뒤가 허전해 :수사 건수 해마다 늘지만 지원은 ‘제자리걸음’ :인원 · 장비 확충, 수사 기법 개발 뒷받침해야”, 「시사저널」, 통권954호(2008-02-05), 독립신문사, 2008.

배영주, “강력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인프라 구축 방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심희기, “법학자가 본 대한민국 법과학의 현황과 과제”, 「제15회 한국법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사단법인 한국법과학회, 2007년 6월 29일.

유시민,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 : 죽은 자가 말하는 진실을 밝힌다」, 유시민의 원실, 2005.

이명호, “화재조사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이성식,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장전배, “유전자를 이용한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장현석, “경찰의 과학수사체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조병인 외, 「OECD국가와 치안역량비교를 통한 21세기경찰발전방안」, 경찰청 용역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국립과학수사연구소·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2007(제39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7.

경찰청, 경찰백서(2006, 200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7

일본경찰청, 「犯罪情勢」, 平成 18年(2007).

Forensic Science Service,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0-2001; 2001-2002; 2002-2003;2003-2004; 2004-2005.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과학수사국(Bureau of Forensic Services: BFS) 범죄학연구소(California Criminalistics Institute: CCI)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ci.ca.gov/about/aboutcci.htm).

사단법인 한국법과학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sfs.org/)

영국정부 산하의 법과학공사(Forensic Science Service: FSS)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forensic.gov.uk/forensic_t/inside/contact_us/index.htm).

일본과학경찰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pa.go.jp/koho1/sikumi/htm)

A Study on the Forensic Science Research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in Korea

Cho, Byung-In*

Crime phenomenon of modern society are rapidly changing in line with its everlasting diversification, sophistication, professionalization, magnification, internationalization, etc.. On the other hand, circumstance of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 are becoming much different as well as a result of criminal justice renovation. Keeping in mind above facts, it could never be exaggerated even if we repeated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orensic science study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However, actual situation of both are much lower than the expectation of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In that connection, the author tried to critically analyze the status quo of both dimensions from the viewpoint of five major potential variables ; organization, personnel, money, corporation, and leadership.

Research results reveal that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forensic science study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are reluctant to communicate with the experts from other institutes or agencies.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NISI) that are actually leading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is lack of professionals with sufficien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spite of excessive demand for forensic examination. It also seems to be very difficult to reconstruct the official relation with National Police Agency since legal status of NISI was totally changed in 2008 from one of general administrative institute attached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of Safety into an Agency guaranteed independence and discretion to some extent in its operation and management.

As solutions to overcome present deadlocks, the author suggested five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Law

countermeasures such as enlargement of capability of NISI, expansion of communication among experts, encouragement of interest in forensic science by public sector, divers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stable supply of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NISI.

❖ Keywords : Forensic Scienc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Scientific Investigation, Criminal Investigation.

투고일 : 2009. 1. 30 / 심사(수정)일 : 2009. 2. 4 / 게재확정일 : 2009. 2. 26